## 울산광역사중구 공작시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97 제출년월일: 2009. 6.

제 출 자:울산광역시중구청장

#### 1. 제안이유

상위법의 개정 조문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과 조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Ο 제명 정비
  -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    - ⇒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
- O 상위법의 개정된 조문 반영(법 제23조가 삭제됨)
  - 법 제23조 내지 제29조 →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(안 제6조)
- O 조문 용어정리(안 제2조, 안 제6조 ~ 안 제10조)
  - 인 → 명, 자 → 사람
  - ∘ 규정에 의거 → 규정에 따라
  - 내지 → 까지
  - "관하여"는 삭제

### 3. 근거법규

- 공직자윤리법 제24조 ~ 제29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5. 참고사항
  -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6. 1 ~ 6. 20)

## 울산광역사중구 공작시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**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명 "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"를 "울산광역 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"로 한다.
- 제2조제1항 및 제1항제1호·제2호, 같은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인"을 "명"으로 각각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각 호의 규정에 의거"를 "각 호에 따라"로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제2호의 규정"을 "제1항제2호"로 한다.
- 제6조제2항제4호 중 "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하는 자"를 "법 제24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"으로 한다.
- **제7조 중** "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"를 "처리하기 위하여"로 한다.
- **제8조 중** "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"를 "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"로 한다.
- 제9조 중 "공직자윤리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하고 "지방의회"를 "구의회"로 한다. 제10조 중 "관하여"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: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명: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 <u>인</u> 을 포함한 5 <u>인</u> 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 역시중구청장 인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	제2조 (구성) ①5명
1. 3인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 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(비영 리 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 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	1. 3 <u>喝</u>
2. 2인의 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1명과 울산광역 시중구 (이하 "구"라 한다) 소속직원 1명 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	2. 2명
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서 다음 <u>각 호의 규정에 의거</u> 선임한다. 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<u>3인</u>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. 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<u>2인</u> 중에서 선 임하여야 한다.	②
③ <b>제1항제2호의 규정</b> 에 의한 의원은 구의 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	 ③ <u>제1항제2호</u> 
제6조 (위원회의 회의 등) ①(생략) ②(생략) 1. ~ 3.(생략) 4. <u>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하는 자</u> 에 대한 고발 ③(생략) 1. ~ 3.(생략) ④(생략)	제6조 (위원회의 회의 등) ①(현행과 동일)         ②(현행과 동일)         1. ~ 3.(현행과 동일)         4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        사람         ③(현행과 동일)         1. ~ 3.(현행과 동일)         ④(현행과 동일)         ④(현행과 동일)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위원회의 간사 등) ①위원회의 시무를 처 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②(생략)	
	제8조 (수당과 여비) <u>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</u>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
제9조 (의회에 연차 보고서 등 제출) 공직자원 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년도 의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 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.	구의회
제10조 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규정으로 정한다.	제10조 (운영규정) <u>&lt;삭제&gt;</u>

# 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697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09. 6. 25(목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7. 2(목)

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7. 8(수)

-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)
  - O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
-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 내용을 알기 쉽 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골자

가. 제명 정비

-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- ⇒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나. 상위법의 개정된 조문 반영(법 제23조가 삭제됨)

- 법 제23조 내지 제29조 →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
   (안 제6조)
- 다. 조문 용어정리(안 제2조, 안 제6조 ~ 안 제10조)
  - 인 → 명, 자 → 사람
  - 규정에 의거 → 규정에 따라
  - 내지 → 까지
  - "관하여"는 삭제
- 5. 관련법규
  - O 공직자윤리법 제24조 ~ 제29조
- 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  - O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